

2024년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차례^{*}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4년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

List of Contents | 목차

I 개요 1

1. 목적 및 추진 경과 2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4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6
4. 주요 점검 항목 7

II 2024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8

1. 유형별 지적 사항 9
2. 주요 위반 사례 현황 10
3. 2024년 산학협력단별 점검 결과 17

I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과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4. 주요 점검 항목



1. 목적 및 추진 경과

가 목적

- 추진 목적
 -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규모 확대 및 기술사업화 등 업무 영역 다양화로 인한 현장의 회계처리 실태조사 강화 필요
 -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보고·공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으로 산학협력단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나 추진 경과

- 실태점검 추진 경과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2개교에 대한 회계 실태점검 실시 (대학 104개교, 전문대학 72개교, 원격대학 6개교)
 - 2024년 총 17개 산학협력단 점검(대학 7개교, 전문 9개교, 원격 1개교)

< 연도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개교)

연도	대학		전문		원격	합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사립	
'17	3	4	-	3	-	10
'18	2	4	1	3	-	10
'19	4	4	-	6	1	15
'20	6	11	2	5	1	25
'21	6	16	-	2	1	25
'22	4	20	-	15	1	40
'23	1	12	-	26	1	40
'24	2	5	-	9	1	17
합계	28	76	3	69	6	182

○ '24년 실태점검 추진 경과

내용	일정
준비단계('24년 3월~5월)	
'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기본계획 교육부 안내	'24.4.22
'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실행계획 승인	'24.4.29.
'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	'24.5.21.
'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단 선정	'24.5.22.
수행단계('24년 6월~9월)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단 사전교육 실시	'24.6.9.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서면 및 현장) 수행	'24.6.24.~8.29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보고서 최종 검수회 개최	'24.9.23.~27.
종료단계('24년 12월)	
대학재정자문위원회 개최	'24.12.16.~17.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가 실태점검단 구성

○ 구성 방법

-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실태점검단 구성
- 총 15명 선정(공인회계사 10명, 직무 경력자 5명)
- 외부 전문가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실무 및 감사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산학협력단 근무 경력 또는 감사경력에 따라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나 대상교 선정

○ 선정 방식

- 4개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산학협력단별로 선정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후 총점 순 선정

단계	선정 기준
1	인건비 비율
2	미보유 자산 사용료 수익 발생
3	간접비 비율
4	산학협력비 비율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총계를 기준으로 산학협력단 규모를 대·중·소로 분류하고 규모별 비중에 따라 대상교 선정

< '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 현황 >

(단위 : 억 원)

연번	설립	학종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재정규모 유형	운영수익 총계
1	사립	대학	가톨릭대학교	대	1,073
2	국립	대학	인천대학교	대	581
3	사립	대학	광주대학교	중	149
4	사립	대학	강남대학교	중	135
5	사립	전문	구미대학교	중	117
6	사립	전문	경민대학교	중	88
7	사립	전문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중	68
8	사립	전문	부산여자대학교	중	58
9	사립	전문	문경대학교	중	57
10	사립	전문	대덕대학교	소	48
11	국립	대학	광주교육대학교	소	39
12	사립	전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소	23
13	사립	전문	성운대학교	소	23
14	사립	대학	유원대학교	소	18
15	사립	전문	송곡대학교	소	16
16	사립	대학	세한대학교	소	10
17	사립	원격	대구사이버대학교	소	5

※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총계를 기준으로 산학협력단 규모 분류 후, 대규모 2개교, 중규모 7개교, 소규모 8개교 선정('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가 실태점검 업무 프로세스



나 단계별 업무 추진 내용

단계	추진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실행)계획 수립
②	실태점검단 공모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점검단 구성 계획 수립 ▶ 실태점검단 공모 접수 및 심사 ▶ 실태점검단 위원 확정
③	점검 대상 선정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최종 17개 산학협력단 선정 ▶ 선정된 산학협력단에 실태점검 수행 통보 및 안내(서면/현장점검 제출자료, 일정 등)
④	서면 실태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의 자체 점검표 및 제출자료를 이용한 서면 점검 실시
⑤	현장 실태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 현장에서의 실태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규모에 따라 2~4일의 점검 수행
⑥	결과 검수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산학협력단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 대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요 재정 지표를 비교·분석한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재단→교육부) 및 각 대상교 결과 통보

4. 주요 점검 항목

○ 유형별 점검 항목

- 총 74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실태점검 실시

구 분	항목 수	주요 점검항목
I. 예산 및 결산 일반사항		
1. 예산서의 작성 및 공개	6	▶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등
2. 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	3	▶ 결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 회계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등
3. 계약 관한 사항	3	▶ 계약의 원칙 및 계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
II.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점검사항		
4. 자산	20	▶ 예금계좌 관리의 적정성(부외예금 존재여부 등) ▶ 타인 또는 타기관에 대여 또는 채무보증 여부 ▶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 학교기업 재고자산 관리의 적정성 등
5. 부채 및 기본금	6	▶ 임대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등
III.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점검사항		
6. 수익	12	▶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 협약서 및 내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적절히 인식되었는지 여부 등
7. 비용	20	▶ 과제별 산학협력비 및 지원금사업비의 지출이 적절히 정산·보고되는지 여부 ▶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집행의 적정성 등
IV. 세무 및 기타		
8. 세무 및 기타	4	▶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등
합 계	74	

II

2024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1. 유형별 지적 사항
2. 주요 위반 사례 현황
3. 2024년 사학기관별 점검 결과



1. 유형별 지적 사항

가 지적 사항 유형별 구분

- '24년 실태점검 결과, 총 279건(평균 16.4건/1개교)의 지적 사항 확인
 - 유형별로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지적 사항이 191건으로 가장 많음

구분	예·결산 일반사항	계약 관련	재무제표 작성 관련	세무 및 기타	합계
지적 건수	52건	14건	191건	22건	279건

나 주요 지적 사례 건수

구분	점검 항목	건수
예·결산 일반사항	예산편성요령 미작성	8건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및 공개 미흡	11건
	예산의 초과 집행	14건
계약 관련	계약 및 구매의 원칙 준수 미준수	14건
재무제표 작성 관련	유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11건
	재물조사 미흡 등 재물관리 부적정	9건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처리 미흡	8건
	학교회계 귀속수입 산학협력단 인식	3건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의 구분 오류	68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수당 지급 부적정	12건
	내부거래 제거 누락	2건
	간접비 계좌 구분 관리 미흡	4건

2. 주요 위반 사례 현황

가 예산편성요령 미작성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요령에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재정 운용방향), 예산편성 지침, 예산요구서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A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4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요령을 작성 및 공유하지 않음

나 예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 미흡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부속명세서)에 의거, 결산 시 잔액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하나,
 - B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회계연도 결산 재무상태표상 예수금·부가세예수금·임대보증금 기말잔액이 있음에도 해당 계정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하나,
 - C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서만 공개하고 예산심의기구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다 예산의 초과 집행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예산의 전용)에 의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과부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 D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

라 계약 및 구매의 원칙 미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원금 집행 시 2천만원 이상 구매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 E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일반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 방법으로 47,990천원의 계약을 체결함
- F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시약·재료 등 소모품 구매 시 구매비용이 총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요청자는 물품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중앙 구매 신청하여야 하나,
 - 산학협력단의 과제 책임자는 3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임에도 분할구매 등을 통하여 자체 구매하였음

마 유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 취득 이후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은 집기비품, 기계기구 등 자산으로 계상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G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용 18,636천원 등 총 54,936천원을 유형자산(기계기구, 구축물)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타교육운영비로 회계처리함
 - H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분광광도계 등 자산성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면서 기계기구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비, 실험실습비로 당기 비용 처리함

바 재물조사 미흡 등 재물관리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연구·실습 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실·폐기 등의 자산 변동 사항 확인 후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상의 유형자산 취득 금액과 자산관리대장의 유형자산 금액이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 I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에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의 자산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사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처리 미흡

- 특허 출원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 후 등록이 완료되면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고, 실패하면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나,
 - J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건수 9건, 총 3,736천원), 또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특허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계상함(건수 2건, 총 351천원)
-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 시 처분대금은 지식재산권이전수익 계정에 표시하고, 처분원가는 지식재산권비용 중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계정에 표시하여야 하나,
 - K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면서 관련 지식재산권장부금액 1,207천원을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로 비용처리하지 않아 지식재산권 장부금액이 과대계상 됨

아 학교회계 귀속 수입 산학협력단 인식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르면 대학 교비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L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 소유 건물인 창업보육센터를 입주기업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30,000천원 및 임대료수익 26,777천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식하고 있음

자 수익 계정 구분의 오류

- 산학협력단의 수익 인식 시 대가성의 여부에 따라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 수익으로 적절히 구분하고, 자금의 재원에 따라 정부 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여야 하며,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 M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연구비를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회계처리함. 또한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용역 관련 수익을 ‘산학협력 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차 비용 계정 구분의 오류

- 산학협력단의 비용 인식 시 수익의 재원 및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 N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원금사업비로 교육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지출별로 성격(인건비, 실험실습비, 기타교육운영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지원금사업비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에 해당하는 사업비 재원으로 비용 지출 시 기타 지원금사업비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사업비-교육운영비-인건비’로 회계처리 함

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지급을 위한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 기준(연구 기여도가 반영된 성과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지급 기준)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명확한 지급 대상자(연구자 및 지원 인력)를 선정하여 성과 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O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OO사업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 평가 시 평가 기준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아니하고 성과급(총 11,000천원)을 지급하였음

타 수당 지급 부적정

-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 수당은 인건비로 분류하고, 인건비 집행 관련 내규를 준용하여야 하나,
 - P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직책 수당 7,200천원을 집행하면서 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회계처리 함
- 산학협력단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보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결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Q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당 관련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총 116,844천원을 지급함

파 내부거래 제거 누락

-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 내 계좌 간 내부거래 시 수익 및 지출이 아닌 예금 대체로 인식하여야 하며, 수익·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결산 시에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반영하여 수익 및 비용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R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속기관에 간접비 이체 시, ‘연구제 경비’의 과목으로 80,272천원의 비용을 인식하고, 해당 내부거래를 통하여 인식된 비용을 결산 시에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음

하 간접비 계좌 구분 관리 미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 S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관리 계좌를 구분 관리하지 않고 기타운영외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민간 간접비를 같은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3. 2024년 산학협력단별 점검 결과

※ 자료 참고시 유의사항 : 산학협력단별 부적정 사례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위반 사항의 중대성을 대표하지 않으며 업무에 도움이 될 사례를 선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가지원금 집행 시) 계약의 원칙 미준수	'2023년 ○○사업'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과 2건의 구매계약(총 금액 143,000천원)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분할) 수의계약 체결함. 또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계약완료일)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이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대가지급을 지연 처리하였음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5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까지 수의계약 가능)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임대료 지급 부적정	산학협력단은 교정 내 건물의 일부를 학교법인과 임대 계약 체결 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가톨릭대학교기술지주(주)의 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총 41,112천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비로 부담하고 있음. 기술지주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술지주회사의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기술지주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무형자산 처분 관련 회계처리 누락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지식재산권이전수익은 인식 하였으나 관련 양도자산을 무형자산에서 제거하지 않아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4,165천원이 과소 계상됨

2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가과제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1조에 따라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ex. 일반 기업체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집행 부적정	국가과제간접비를 재원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인식하고, 지급 한도는 10%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할 때는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성과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외에 간접비수익의 20%를 추가로 연구책임자에게 지원해주고 있어, 총 1,665,588천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간접비 수익 6,064,080천원 대비 27.46%로 기준비율(10%)를 초과함. 또한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27조에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함
학교법인 전입금 회계처리 오류	2023년도에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2,238,030천원을 학교법인 전입금이 아닌 기타지원금수익으로 계상함

3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적립 오류	운영차익처분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570,467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확정채무의 미지급금 인식 오류	<p>결산일 현재 신용카드 미결제액 49,546천원과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거래 금액 16,470천원에 대하여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정산 인건비 및 연구수당 105,753천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음.</p> <p>또한, 2024년 2월분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 산학협력단 부담금 9,333천원에 대하여 관련 비용 및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학교 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2,689천원을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인식함</p>
참여기관 연구비 수익 및 비용 인식 오류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서 타 기관과 공동(연구)과제 수행 시, 산학협력단으로 전체 연구비가 입금되면 자기 연구비를 제외한 타 기관 귀속 연구비의 수취 및 전달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관련 수익 및 비용이 과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광주광역시 시민안전 교육센터 운영 사업(주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참여기관 연구비 100,000천원을 광주시로부터 수취 시 '지원금수익-교육 운영수익'으로 인식하고, 참여기관에 전달 시 '지원금사업비-교육과정 개발비'로 비용처리 하여 수익과 비용이 과대계상 되었음

4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고 재원 계약 관련 계약보증금 미수취	2023회계연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수행용 딥러닝 PC' 등 12건의 품목을 공개 입찰에 부쳐 계약하였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보험증권) 및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함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집행 부적정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의 지급 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은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간접비가 입금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2023년도 연구개발능력성과급(81건, 79,657천원)을 성과 평가 없이 연구책임자에게만 지급하였음
정기적 재물조사 미비 등 자산관리 부적정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제28조(관리절차)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매 격년 단위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자산에 대한 소재 파악, 불용처분 필요여부, 관리주체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자산관리대장의 자산 금액과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일치하지 아니함

5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적립금 이자 사용 부적정	적립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은 해당 적립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이자수입 전액을 운영비(일반관리비/학교전출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예산초과 집행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과부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23회계연도 결산상, 유형자산취득지출 계정과목에서 (최종)추가경정예산 대비 47,665천원 초과 집행하였음						
미수금 계상 누락	산학연협력계약 관련 수취채권(2건, 218,001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참고 : 계정과목별 해설] <table border="1" data-bbox="397 1296 1237 1546"> <thead> <tr> <th data-bbox="397 1296 532 1345">구 분</th> <th data-bbox="532 1296 1237 1345">해 설</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7 1345 532 1447"> 미수금 </td> <td data-bbox="532 1345 1237 1447"> 산학연협력계약에서 발생한 수취채권 및 운영외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td> </tr> <tr> <td data-bbox="397 1447 532 1546"> 매출채권 </td> <td data-bbox="532 1447 1237 1546">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등 수취채권 </td> </tr> </tbody> </table>	구 분	해 설	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에서 발생한 수취채권 및 운영외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매출채권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등 수취채권
구 분	해 설						
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에서 발생한 수취채권 및 운영외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매출채권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등 수취채권						

6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출원 신청 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 후 등록이 완료되면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고, 실패하면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나,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디자인 출원비 1,830천원을 연구활동비로 당기 비용 처리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도 등록하지 않음. 또한,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의 지식재산권은 7건이나, 무형 자산 명세서의 지식재산권은 2건으로 5건의 부외자산이 존재함
인건비 계정분류 오류	창업보육센터 직원 인건비 31,167천원을 '일반관리비-인건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관리비-일반제경비'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함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집행 부적정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의 지급 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나,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지 않고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637천원(6개 과제)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급함

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자산 계정 분류 부적정	<p>한국연구재단 '노인 유사체험 교육 증강현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용 PC 등자산성 물품을 구매하면서 연구활동비 계정으로 당기 비용 처리하였으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무형자산인 회로해석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며 기계기구 과목으로 회계처리함</p>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오류	<p>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시 출연재산을 4,000천원 과소계상 하고 있으며 운용소득은 10,166,580천원과대계상 하고 있음</p> <p>(참고 사항)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시,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성 없는 대응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출연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보고대상 출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액과 차감액을 통해 계산함</p>

8

부산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인건비 계정과목 분류오류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간접비사업비-인력지원비'내 세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인건비'로 회계처리함
결산 부속서류 미작성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부속명세서)에 의거, 결산 시 잔액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하나, 부산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채(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잔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직원 퇴직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총 62,978천원), 부산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상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일 현재,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퇴직급여 관련 미지급비용을 설정하였음

9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가지원금 집행시) 계약의 원칙 미준수	'2023학년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000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운영과 관련한 용역 수급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후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용역 개시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금액 오류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급여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 급여총당부채를 설정함에 따라 퇴직급여총당부채가 과대설정되어 있음
일반관리비 계정과목 오류	간접비수의 재원으로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간접비사업비 내 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일반제경비'로 처리하였음

10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비 관리 규정 부재 및 연구활동비 증빙 미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비 집행 시 연구비 사용 용도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구비 하여야 하나 회의비, 여비 등 연구비 집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정산 처리 시 적정 증빙이 미비함에도 집행하였음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미흡	산학협력단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분실·폐기 등의 자산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재물조사 결과는 회계에 즉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금액과 재물대장(자산관리대장)의 유형자산 금액이 일치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의 재물조사 결과를 회계에 즉시 반영하지 않아, 2023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금액과 자산 관리대장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산학협력 수익 인식 오류	과세사업 성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인식할 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예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산학협력수익 및 기타산학협력수익이 과대 계상 되었음

11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일반경쟁 입찰 대상의 (분할)수의 계약 체결	국가지원금 집행 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총금액 62,419천원의 사업을 3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함
계약 관련 대가 지급 시 완납증명서 미수령	국고 사업의 계약 건에 대한 검사 및 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14일) 내에 검수 완료 및 국세징수법 제107조 등에 따라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를 대가 지급 시 수령하여야 하나, 일부 계약에 대해 14일 이후 검수하고, 대가 지급 시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수령하지 않음
예수금 계정과목 분류 오류	제세예수금(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19,957천원을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함

1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수취 비율 적용 미흡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취 관련 내부규정(산학협력단 연구 및 사업관리지침)상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계상 기준에 따르며,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등급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AI디지털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체계개발'의 경우 간접비를 수취하지 않음
결산 시 미수수익 미계상	결산 기말 현재 정기에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결산일까지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결산 시 정기에금에서 발생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음(5건, 3,240천원)
예수금 계정과목 분류 오류	예수금 및 제세예수금 명세서 작성 시, 성격에 맞게 예수금과 제세예수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나, 제세예수금 계정에 해당하는 혁신지원 사업 연구원 및 연구교수에 대한 4대 보험료 7,056천원을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계상하였음

13 성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무형자산 상각 개시 시점 적용 오류	당기 취득한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을 기타유형 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각 대금 지급시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여 상각비 36,667천원이 과대 인식됨
선수수익 과소 계상	혁신지원사업 및 지방전문대학활성화 사업의 수익 인식 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현금 수취 시점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결산일 기준으로 선수수익 금액이 과소 인식되어 있음(혁신지원사업 116,421천원,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339,508천원)
운영외비용 인식오류	혁신지원사업단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2,042천원을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기타운영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함
내부거래 제거 미수행	간접비 이체 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결산 시점에 내부거래를 제거 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수익과 비용이 각각 216,922천원 과대 계상 되었음. 또한 혁신지원사업단 및 지방전문대학활성화 사업 직원 퇴직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별도 퇴직적립 계좌로 이체 시, 수익(기타운영외수익)과 비용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점에 해당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수익과 비용이 각각 13,920천원 과대 계상되었음

14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대학소유 자산 무상 사용 및 임대수익 인식 오류	대학 소유의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수령한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 및 임대료를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고 대학소유 건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학으로 지급하지 않음. 또한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보상금 산정 절차 누락	노하우 기술이전에 따른 산학협력보상금 지급 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실시료 수입액×발명자 공헌도×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 근거 없이 이전수익에 임의 비율(90%)을 적용하여 산정된 9,000천원을 산학협력보상금으로 지급함
선수수익 과소계상	창조산업연구협약 외 1개 과제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가 수령시점에 전액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결산일 기준으로 선수수익 14,979천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음
학교회계 전출금관련 회계처리 오류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급하는 금액만을 기록하는 계정이나,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기, 수도 사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00천원을 학교회계로 지급하면서 이를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목으로 인식하였음

15 송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법인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세무조정 수행 후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신고조정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기본금)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나, 송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회계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2023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수익 세부 구분 오류	대가성 있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 사후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91,805천원 등 총 110,005천원을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지원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함
유형자산 취득 회계처리 부적정	태블릿 컴퓨터 구입 비용 18,636천원 등 총 54,936천원을 유형자산(기계기구, 구축물)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타교육운영비로 회계처리함

16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미흡	산학협력단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분실·폐기 등의 자산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재물조사 결과는 회계에 즉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금액과 재물대장(자산관리대장)의 유형자산 금액이 일치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외부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기계기구 등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물품관리규정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취득한 자산의 분실·폐기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임차보증금 관리 부적정	산학협력단 서울사무소의 임차보증금 지급 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공간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150,000천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
지식재산권 지출의 회계처리 오류 및 관리 미비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출원 시점에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등록이 완료 되면 무형자산으로 대체하고 등록에 실패할 경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하여야 하나, 2023회계연도 지식재산권(상표권) 출원비용 1,749천원을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시점에 일반관리비로 당기 비용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음

17 대구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수익 세부 구분의 오류	대가관계가 없는 보조금 '1인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교육운영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수익이 아닌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으로 수익을 인식함
예산편성 요령 미작성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요령을 작성 및 공지하지 않음
회계직원 재정보증 보험 미가입	회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로써, 산학협력단 회계직원으로 임명받은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산학협력단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